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9261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노지선, 조규영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변 론 종 결 2026. 6. 19.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2026. 7.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초기화면 앞부분에 별지1 기재 공고문을 10cm × 10cm 이상의 크기로 1년 동안 게재하고,
나. C 프론트 데스크(Front Desk) 건물에 별지1 기재 공고문을 3.5m × 90cm 이상 크기의 입간판을 이용하여 1년 동안 게재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지체일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생전에 건축가로 활동한 망 D(2011. 6. 26. 사망, 활동명 E,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다.

(2) 피고는 2004년경부터 제주 서귀포시에서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라는 5성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호텔 홈페이지 게시글에의 망인의 성명, 초상 무단사용 등



(1) 피고는 2023. 1. 18.경부터 2024. 1. 26.경까지 이 사건 호텔 홈페이지의 세부 메뉴인 '호텔 소개(ABOUT C)'란에 별지2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이 망인의 건축물이라는 취지의 글과 망인의 사진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호텔은 망인의 건축물이 아니다. 한편 그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 F의 블로그 등에는 망인이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여럿 게시되어 있었다.

(2)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24. 1. 2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망인이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호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이 사건 호텔과 망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정정 안내문을 게시하며, 상당한 시일 내에 피고가 블로그 등에 광고한 망인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3)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 호텔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며, 원고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글에서 망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피고는 2025. 9.경에는 이 사건 호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지3과 같은 팝업 형태의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 그 밖의 사실관계

(1) 망인은 2003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G미술관에서 한국 건축가로는 최초로 회고전을 개최하였고, 2004년 독일, 2006년 중국, 2012년 일본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H미술관은 2014년경 E 회고전(I)을 개최한 바 있고, 2019년경에는 모 감독에 의해 'J'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2) 피고(당시 상호 K 주식회사)는 2004. 4. 19.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L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호텔 1차 부지 설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 설계용역은 완공 전 중도타절되었는데, 피고는 2004. 11.경 위 회사 등과의 타절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 잡지에 위 회사 등의 건축설계도면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위 회사 등은 피고와 당시 대표이사(M)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고 측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7 내지 19, 22, 23, 26, 31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청구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홈페이지에 약 1년간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아래 (1)항과 같은 이유로 재산상 손해를,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정신적 손해를 각 입혔다.¹⁾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일부청구)와 정신적 손해 각 5,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5,000만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게시글 게시 시작일인 2023. 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이를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1) 원고는 변론종결 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2026. 5. 29. 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있고, 상속의 대상도 된다. 망인은 생전에 세계 각국에서 건축 관련 상을 수상하고, 망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는 등 명성 있는 건축가로서, 망인의 성명과 초상은 그 자체가 상업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망인의 성명과 초상을 이 사건 호텔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전문 마케팅 업체를 통해 다수의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호텔을 망인과 연관시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행위이다.²⁾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명성 있는 건축가로서 일반 대중에게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는 망인의 성명 등을 자신의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N'을 운영하며 망인의 예술적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5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26. 5. 29.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고,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인데(민법 제997조) 망인은 피고가 2023. 1. 18.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인 2011. 6. 26.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피고는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만 보고 판단한다.



(다) 한편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근거에 관하여, 이 사건 호텔은 총 29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 내 4성급 호텔의 2023년 객실 가동률은 76%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호텔의 연간 객실 수입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이 약 44억 원에 이른다(피고 또한 이 사건 호텔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이 약 4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평균 객실료: 약 55만 원(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평균)
- 연간 예상 객실 판매 수: $29\text{객실} \times 365\text{일} \times 76\%(\text{가동률}) = \text{약 } 8,043.4\text{객실}$
- 연간 예상 객실 수입: $\text{약 } 55\text{만원} \times \text{약 } 8,043.4\text{객실} = \text{약 } 44\text{억 } 2,387\text{만 원}$

이 사건 호텔이 VIP 전용 투숙 호텔로 선호되는 고급 리조트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호텔이 세계적 건축가인 망인의 작품이라는 허위사실은 피고의 브랜드 가치와 수익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그로써 이 사건 호텔의 가치와 고객 유치율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 사건 게시글이 이 사건 호텔 홈페이지에 약 1년 동안 게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이 사건 호텔의 연간 객실 수입 추산액(약 44억 원)의 약 1%에 해당하는 5,000만 원 정도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 우선 5,000만 원을 일부청구한다.

(2) 정신적 손해

(가) 망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 침해: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망인이 이 사건 호텔을 설계·건축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이 사건 호텔의 디자인적 특성과 공간 구성이 모두 망인의 건축철학과 미학적 선택인 것처럼 오인되고, 망인이 추구하지 않은 건축적 가치까지 그의 작품세계에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망인이 평생에 걸



처 구축해 온 예술적 세계관과 건축철학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 즉 건축가로서 명예가 훼손되었다. 그리고 이로써 망인의 유일한 딸로서 망인의 예술적 가치 계승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망인의 건축철학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온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이 침해되었다.

(나) 망인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 침해: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유명한 건축가인 망인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망인의 성명권과 초상권³⁾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는 단순히 망인 개인의 인격적 이익 침해에 그치지 않고 망인의 예술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온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을 침해한다.

나. 정정공고문 게재청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 게시로써 망인의 성명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성명권의 경우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회복이 어려워 금전배상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 명예 훼손과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는 각각 민법 제764조⁴⁾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⁵⁾에서 금전배상 외의 구제수단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원고의 항의 이후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 망

3) 원고는 2026. 5. 29. 자 준비서면의 해당 부분에서 망인의 성명권 침해를 주장하였을 뿐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하여 망인의 초상 무단사용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도 망인의 초상권 침해 주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4)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이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였다는 허위의 정보가 남아 있어 망인의 명예와 예술적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전배상 외의 피해 회복 조치로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기재 정정공고문을 게시, 게재 할 것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우리 법체계상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독자적인 재산적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내 실정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는 이상,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⁶⁾

설령 이와 달리 퍼블리시티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 한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특수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당사자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재산권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닌

6) 한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른바 초상영리권)를 가지므로(뒤에서 보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인격권의 구체에 있어 특별한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인격권은 상속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 역시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망인의 인격권인 초상권(초상영리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게시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나 그 손해액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이상{원고는 위 2. 가.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곧바로 피고와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하여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신설되어 2022. 6. 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⁷⁾ 타목은 같은 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위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함이 법률의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 위와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임을 요구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에 반하여, 역시 보호대상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임을 요구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함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주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으로 이해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등 표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요건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문언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건축계 내에서 어느 정도 명성 있는 주지의 인물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성명과 초상 등이 이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성명, 초상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이 사건 조항 신설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유 참조



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게시글 게시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게시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등 참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망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게시글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망인의 생전 사진과 함께 그 밑에 'C호텔(이 사건 호텔) 건축가 故O 선생(E)'이라는 기재가 있고, 사진 오른쪽에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 없다. 사람의 온기, 생명을 작품 밑바탕에 두는 일. 그 지역의 전통과 문맥, 에센스를 어떻게 감지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건축물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이다."라는 망인의 어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에 'C(이 사건 호텔)는 제주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건축가 故E 선생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며 지어낸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제주최초의 5성급 전통호텔입니다. C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과 마음 모두 평화롭고, 조화로운 쉼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핵심 사실로 적시하는 이 사건 게시글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그 자체로 망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② 이 사건 게시글이 적시하고 있는 '망인이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였다'는 사



실은 허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게시글이 망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호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읽게 되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망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야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망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진실한 사실(즉, 망인이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망인에 대한 평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쪽에 가깝다고 보인다.

③ 망인이 건축계에서 어느 정도 명성 있는 인사라는 점과 별개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중 '이 사건 호텔은 제주 최초의 5성급 전통호텔이다'라는 부분은 이를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호텔은 비수기에도 월 매출(객실 및 멤버십과 식음료 부문 합계)이 1억 원을 상회하고, 매출이 5~7억 원대에 이르는 달도 드물지 않을 정도로(2015~2023년 기준)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호텔이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기서 더 나아가 망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④ 이 사건 게시글은 그 구체적인 사실적시 방식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의 건축철학(그것이 실제 망인의 건축철학에 부합하는지는 별론)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어록을 인용한 것 역시 망인이 건축계에서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인물이라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게시글에 첨부된 망인의 사진도 무난한 것이다.

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건축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해 망인이 생전에 구축해 온 예술적 세계관과 건축철학에 대한 오인 내지 혼동이 초래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유족이자 망인의 예술적 가치 계승을 위해 힘쓰는 원고가 불쾌감 등을 느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위 ① 내지 ④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적 개념으로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망인 사망 이후 평소 망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 등 참조).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인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등 참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한 '망인이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허위이고, 그럼에도 피고는 건축계에서 명성 있는 인사인 망인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를 자신의 이 사건 호텔 영업에 이용하였다. 이는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 및 초상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나아가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딸로서 망인의 사망 후 'N'을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활동하는 등으로 망인의 예술적 유산과 건축철학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망인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과



내용, 거기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표현,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방법 및 이 사건 게시글이 이 사건 홈페이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망인의 건축계 내 인지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예술적 가치와 건축철학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원고의 항의 이후 피고가 취한 시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원고와 피고가 과거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 등의 지식재산권을 피고가 무단사용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이미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었던 점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망인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경애·추모감정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게시일인 2023.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공고 게재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764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정정공고문의 게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게시행위가 망인의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그로써 원고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 침해)한 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 명예 이외의 인격권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에 관한 민법 제764조와 같이 명확한 실정법의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 제764조에서 정한 것과 같은 '인격권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만약 그와 같이 보게 되면 인격권 중 명예에 관하여는 특별히 위와 같은 특칙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인격권은 그 성질상 배타적인 권리이고, 역시 배타적인 권리인 물권에 관하여 대세적인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관하여도 이를 근거로 하여 대세적인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되기는 하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아무런 유형의 청구나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듯 인격권에 기하여서도 그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은 정정공고문 게재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분명한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명예 이외의 인격권에 관하여는 위 민법 제764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특허법 제131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117조, 상표법 제113조, 저작권법 제127조⁹⁾ 등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명예 이외의 인격권에 기하여서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폭넓은 '적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조치'는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성명권,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정정공고문의 게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9) 특허법 제131조는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디자인보호법 제117조와 상표법 제113조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용신안법 제30조는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위 특허법 제131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7조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만

판사 이주영

판사 최은정



별지1

공 고 문

저희 C는 건축가 고(故) E이 당사 호텔 건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8.부터 2024. 1. 26.까지 당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건축가 고(故) E의 성명, 사진 및 인터뷰 내용과 함께 고(故) E이 당사 호텔을 건축했다는 글을 게시하여 광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故) E이 당사 호텔을 건축하였다는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기존에 당사가 광고한 내용과 같이, 당사에 관하여 '건축가 고(故) E이 건축한 호텔'이라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글을 게시한 이용자들은 해당 게시글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C

대표이사 P



별지2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 없다. 사람의 온기, 생명을 작품 밑바탕에 두는 일. 그 지역의 전통과 문맥, 에센스를 어떻게 감지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건축물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이다."

는 제주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건축가故 선생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며 지어낸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제주최초의 5성급 전통호텔입니다.

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과 마음 모두 평화롭고, 조화로운 심 되시길 바랍니다.

호텔 건축가

선생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20

별지3

